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6. 8. 24

나. 회부일자 : '96. 8. 24

3. 제안이유

- 경보통제소 및 재난관리상황실의 상황관리 요원과 안전점검 기동반원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본청 정원 18명을 증원 : 5급 4명, 4급 이하 및 기능 14명)
 - 경보통제소 - 5명 (6급 이하 및 기능 5)
 - 재난관리상황실 - 5명 (5급 3, 6급 이하 2)
 - 안전점검기동반 - 8명 (5급 1, 6급 이하 및 기능 7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민방공 경보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위험 요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기동성있는 점검활동 및 안전관련 민원의 능동적 대처를 기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본청 정원 총수를 937명에서 955명으로 18명을 증원

(5급 4명, 6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)

- 경보통제소 - 5명 (6급 이하 및 기능 5)
- 재난관리상황실 - 5명 (5급 3, 6급 이하 2)
- 안전점검기동반 - 8명 (5급 1, 6급 이하 및 기능 7)으로 인력을 배치하여

각종 재난상황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

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